

건의서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제도 개선사항

2024. 4.

FKI 한국경제인협회

목 차

- I. [기업집단현황] RSU 공시 도입 반대 3
- II. [기업집단현황] 공시항목 합리화 7
- III. [대규모내부거래] 공익법인 의결 · 공시 의무 완화 11
- IV. [기업집단현황] 편입 · 제외 회사 거래기간 개선 15
- V. [기업집단현황] 공시 관련 일정 합리화 16

1. 현황

□ RSU와 관련하여 다수의 이해관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개정('23. 12. 20)

○ 올해 3월에 공시된 '2023년 사업보고서'부터 RSU 공시 의무화

* [기업공시서식 작성 기준 상 RSU 관련 작성 의무 사항 (금융감독원, 2024. 3)]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제외한 성과조건부주식,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스톡그랜트 등의 주식기준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주식기준보상 제도의 명칭
2. 부여근거 및 절차
3. 주요내용
4. 부여한 인원수
5. 부여한 주식 등의 총수
6. 당기중 지급 주식 등의 총수
7. 누적 지급 주식 등의 총수
8. 미지급 주식 등의 총수

【 작성지침 】

- i. 이 항목은 회사가 공시대상기간중 부여한 주식기준보상을 기준으로 기재한다. 다만, 공시대상기간 전에 부여했다라도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임직원 등에게 미지급한 주식 등이 있는 경우 또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 중 취소·지급한 주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위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 ii. 제3호 사항은 가득조건, 지급시기, 양도제한 기간 유무 및 방법, 부여주식의 수의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기재한다.
- iii. 제4호 및 제5호 사항은 공시대상기간중 주식기준보상약정을 체결한 임직원 등의 수 및 약정상 지급하기로 예정한 주식 등의 수를 합산하여 기재하거나 연도별, 회차별로 구분하여 기재할 수 있다.
- iv. 제6호 사항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 까지 기간동안 주식기준보상약정에 따라 실제 지급한 수량을 기재하고, 제7호 사항은 공시대상기간중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 지급한 누적수량을 기재하며, 제8호 사항은 제4호의 인원에게 지급하기로 예정한 수량에서 실제 지급한 누적수량을 차감한 수량을 기재하되, 취소된 경우 취소수량 및 그 사유를 추가로 기재한다.

□ 공정위는 매뉴얼 개선안에서 기업집단현황공시 항목에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거래 현황’ 추가 발표('24. 3. 18)

- 공정위는 기존 금감원 공시에 준하여 거래상대방, 부여일, 주식지급 약정 유형, 주식 수, 가득 조건, 지급 시기 등 공시하는 안 검토 중

* [2024년도 공시 매뉴얼 개선안 (공정거래위원회, 2024. 3)]

17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거래 현황

(공시내용) 소속회사가 직전 사업연도 동안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계열회사 제외)와 거래한 유가증권의 매도·매입금액(장부에 기재된 유가증권 매도·매입 금액) 및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친족·임원에 한함)에게 성과 보상 등을 위하여 주식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 내역

[참고] 양도제한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RS)* 및 스톡그랜트(Stock Grant) 지급 약정 등 명칭과 관계없이 성과 보상 등을 위하여 주식을 활용하는 약정을 말함

- * 양도제한조건부주식 지급 약정으로는 ①약정 체결 후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주식이 귀속되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 지급’ (Restricted Stock Units; RSU), ②약정과 동시에 주식이 귀속되나 일정 조건 충족 시까지 주식양도권이 제한되는 ‘양도제한조건부 주식보상’ (Restricted Stock Awards, RSA) 등이 있음

□ 공시양식 및 기재요령

<작성양식 17>

다. 주식지급 거래 약정 내역(안)

※ 금감원 공시에 준하여 거래상대방, 부여일, 주식 지급 약정의 유형, 부여 주식 수, 가득 조건, 지급시기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최종 공시양식 및 작성 방법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할 예정

2. 문제점

□ 중복공시로 인한 실무자 부담 가중

- 금감원 정기보고서(사업보고서 및 반기/분기보고서) 및 지분공시인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 이미 RSU 관련 사항* 기재 의무화
- 금감원 공시내용에 공정위 공시에서 요구하는 모든 항목** 포함

* [기업공시서식 작성 기준 상 RSU 관련 작성 의무 사항(금융감독원, 2024. 3. 1)]

- 1) 주식기준보상제도의 명칭, 2) 부여 근거 및 절차, 3) 주요 내용, 4) 부여한 인원수, 5) 부여한 주식 등의 총수, 6) 당기중 지급 주식 등의 총수, 7) 누적 지급 주식 등의 총수, 8) 미지급 주식 등의 총수

** 3) 주요 내용 중 가득조건, 지급시기, 양도제한 기간 유무 및 방법, 부여주식의 수의 조정에 관한 사항 등 포함하여 기재

- 기업 공시 담당자들은 이미 과중한 업무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바,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이중 공시를 의무화하여 부담 가중 우려

□ RSU 약정 내역을 공시하는 것은 유의미한 정보가 아님

- RSU는 주가 변동 및 성과 달성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지급되는 주식의 수 및 금액이 달라져, 실지급 금액은 매우 낮아질 수 있음
- 공정위는 ‘RSU 지급을 약정한 경우, 그 약정 내역’을 공시하도록 하여 이해관계자에게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함

* [사례] 네이버는 코스피 200 내 기업 대비 상대적 주가상승률 백분위에 따라 0~150% 내에서 최종 지급규모를 결정. RSU 1회차였던 2022년에는 네이버 주가 수익률(-53.1%)이 코스피200 지수 수익률(-26.20%)을 하회해 임원들은 RSU 가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타 공시를 통해 이해관계자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 가능

- 특수관계인에게 RSU 등을 통해 자사주인 주식을 지급하여 지분이 변동하는 경우,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를 통해 적시에 확인 가능
- ‘최대주주 등의 주식보유 변동’ 공시는 1% 이상 지분 변동 시, 사유 일로부터 5일 이내 공시하도록 하여 빠른 시일 내 정보 제공 가능

* 쌍방특별관계자(상호간 특별관계에 해당, 친족 및 공동보유자 등) 추가-제외 시 1% 이

- 경영목표 및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공시의무화는 과도함
 - 가득조건은 회사의 주요 경영목표에 해당할 수 있어, 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것은 경영권 침해 우려
 - RSU 등 주식 지급은 인력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수단일 뿐, 자금/자산의 내부거래와는 그 본질이 다르므로 공시의무화는 불합리

3. 제안 사항

- RSU 관련 공정위 공시 도입 반대
 - 중복공시 우려 및 실무자 부담 증대로 공정위 공시 도입 원천 반대
 - 기존 금감원 공시로 이해관계자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 가능

1. 현황

□ 기업집단현황 공시는 30개 항목이며, 세부항목까지는 49개에 달함

2. 문제점

□ 공시항목이 과도하게 많아 기업의 공시 부담이 과중한 상황

○ 기업 실무자들은 공정위 공시 업무에 매우 큰 부담을 느끼고 있음

- * ① 다년간 같은 업무를 하여도 전부 파악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방대하며 직관적이지 않은 매뉴얼 ② 실수로 공시를 놓치거나 틀렸을 때, 위반 정도와 상관없이 부과되는 과태료 ③ 결국 공시 위반의 책임은 실무자 개인이 지는데, 높은 업무 난도로 인하여 충분히 발생 가능한 실수에 대해서도 선처나 예외 없는 과태료 처분으로 인한 실무자 개인의 일신상 부담(개인평가나 금액적인 부담) 등이 있으며, 결국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너무 많은 공시항목과 기재사항으로 인하여 틀리지 않고 공시를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임

○ 공정위는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기업집단현황 공시의 공시항목을 늘려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켜왔음

- * 2021년 추가내역 : 임원의 현황 공시 기재사항 추가(임원의 직위, 임기만료(예정일), 소속위원회 명칭 등), 이사회 운영현황 기재사항 추가(이사회 안건이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 대상인 경우, 해당 공시일 기재),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운영현황 기재사항 추가(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 실시회사의 경우, 각 의결권 행사비율 기재), 기타자산 거래현황 세분화(유형 및 무형자산으로 세분화)
- * 2022년 추가내역 : 계열회사간 물류·IT서비스 거래현황 공시 신설,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과의 내부거래 현황 공시 신설, 계열회사간 상품용역거래에 대하여 연간에서 분기별로 매출액 기재 세분화, 계열회사간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을 유상 및 무상으로 세분화, 동일인용 기업집단현황 공시 신설(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국외 계열회사 현황, 국내계열회사에 직·간접 출자산 국외 계열회사 현황 등)
- * 2023년 추가내역 : 분기공시에서 연공시로 전환한 항목들에 대하여 분기별로 기재 세분화

* 2021년~2023년 중 간소화 내역 : 2021년 계열회사간 자금거래 현황 중 당좌차월 거래현황 삭제, 2023년 분기공시사항 8개 항목을 연공시로 전환, 물류·IT서비스 거래현황 중 국내 매입액 입력란 삭제

- 2023년, 8개의 분기공시 항목을 연공시로 조정하여 부담을 감경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분기별 공시를 연 1회에 몰아서 공시하는 것에 불과

* 연간 거래금액을 분기별로 세분화하여 기재하게 된 항목 : ①계열회사간 자금거래 현황, ②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대여 현황, ③계열회사간 유가증권거래 현황, ④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거래 현황, ⑤계열회사간 기타자산 거래 현황, ⑥특수관계인에 대한 기타자산 거래 현황

* 실무자 입장에서는 연공시 때 입력·점검 금액이 더 많아지게 되었고, 오히려 기존에는 분기별로 분산되어있던 업무부담이 연1회 공시로 몰리게 되었음

* 특히 계열회사간 자금거래 현황 중 기타합계(국내계열회사를 제외한 금융기관, 타법인, 국외계열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합계)의 경우, 분기공시 당시 여신한도 차입금은 분기말 잔액을 기재하도록 하던 것을 별다른 고민 없이 그대로 연공시로 가져오면서, 현재 결과적으로 분기별 기타합계 기재금액의 소계가 실제 연간 차입금액과 달라지게 되는 현상이 발생

ex) (단위: 백만원)

거래기간		기타합계	
1/4		1,400	- 1분기 발생 단기차입금 10억원, 1분기말 마이너스 통장 차입 잔액 4억원 → 14억원 기재
2/4	-	- 4분기 발생 단기차입금 10억원, 4분기말 마이너스 통장 차입 잔액 8억원 → 18억원 기재
3/4		-	- 직전연도말 기준 마이너스 통장을 모두 상환한 경우, 연간 발생 차입금만 소계에 기재 → 20억원 기재
4/4		1,800	
소계		2,000	↔ 소계가 분기별 합계와 달라 직관성이 없음

□ 공시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복잡한 공시항목 재검토 필요

○ 공정위는 기업집단현황 공시의 도입 배경을 ‘이해관계인에 의한 시장감시’ 및 기업 스스로 기업집단 전체의 정보를 ‘일목요연하고 포괄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명시

○ 현재 기업집단현황 공시는 복잡하고 직관성이 떨어져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오히려 감시기관의 원활한 감시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

- 과도한 공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도록 모든 공시항목을 원점에 놓고 과감히 개편해야 함

3. 제안 사항

□ 공시항목 합리화

- 이해관계자에게 불필요하거나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다른 공정위 공시 등을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항목 삭제
 - * 계열회사간 상품용역거래 현황 중 매출액 총계 삭제 : 매출액 총계는 기업집단현황 공시 내 다른 항목(회사 손익현황)에서 확인 가능. 특히 해당 항목은 내부거래가 없는 회사도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같은 공시 내 중복된 정보임에도 기재하지 않을 경우 공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는데, 이 항목은 공정위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상당히 자주 틀리는 공시항목임
 - * 계열회사간 주요 상품용역거래 현황(사실상 거의 대부분 주업종 항목을 거래하고 있어 거래건별 분류의 의미가 크지 않고, 이는 일반 상품용역거래 내역에서도 확인 가능),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높은 계열회사와의 내부거래 현황(직전 2개년도 기업집단현황 공시를 통해 확인 가능)
 - *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등을 공시하는 상장법인 및 외감법인의 경우, 재무현황, 손익현황 등의 기재를 생략하고 해당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링크로 대체할 수 있도록 변경
 - * 임원현황 중 임기만료(예정)일 삭제 : 임기 만료(예정)일은 말 그대로 예정일로, 일신상의 사유로도 변동이 가능하고, 계속 중임을 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일 자체가 의미가 없어 사실상 부정확한 정보에 해당할 수 있음
- 내부거래가 아닌 기재사항은 삭제하여 항목별 제목과 같이 “계열회사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거래에 대해서만 공시의무를 부여
 - * 계열회사간 자금거래 현황 중 기타합계 : 계열회사간 거래가 아닌 모든 종류의 차입금 합계를 기재
 - * 계열회사간 채무보증 현황 중 나. 공정거래법상 제한되는 채무보증 이외의 채무보증 항목의 소계 :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이 아닌 모든 상대방에 대한 채무보증 금액의 합계를 기재
 - * 계열회사간 채무보증 현황 중 다. 이행보증 · 납세보증 : 계열회사간 이행보증, 납세보증만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대방에 대한 이행보증, 납세보증 금액의 합계를 기재
- 계열회사간 거래내역을 분기별로 기재하는 항목들은 연간 거래금액만 기재하는 것으로 간소화하여 실질적인 공시 실무 부담 감경

* 연간 거래금액을 분기별로 기재하는 항목 : 계열회사간 자금거래 현황,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대여 현황, 계열회사간 유가증권거래 현황,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거래 현황, 계열회사간 기타자산 거래 현황, 특수관계인에 대한 기타자산 거래 현황

○ 계열회사간 상품용역거래 현황을 간소화하여, 국내·국외 계열회사와의 거래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공시회사 총 매출액의 5% 미만 또는 10억원 미만 등)인 경우 합산하여 기재하거나 생략

* 계열회사간 상품용역거래 현황의 경우 기업집단현황 공시에서 가장 기재사항이 많고 복잡한 항목으로, 국내 계열회사 및 국외 계열회사가 많은 집단의 경우 해당 항목이 수십 페이지에 달하여 작성에 애로사항이 많고, 한눈에 볼 수도 없어 직관성이 떨어짐. 실무자 입장에서도 입력 자료가 과다하여 틀리지 않고 공시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낮음. 그리고 공시를 점검하는 공정위 입장에서도 이를 완벽히 점검하는 것에 어려움이 많을 것임

1. 현황

- 원칙적으로 공익법인은 계열사 내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받고 해당 내용을 공시해야 함
- 다만, 부수적인 거래로서 새로운 거래가 성립하지 않거나 당사자가 거래조건을 결정할 수 없는 행위는 대규모 내부거래로 보지 않음
 - 공익법인이 동일 기업집단 내 계열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처분한 경우에는 예외 없이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발생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4조(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사항)

② 공익법인이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하여야 하는 대규모내부거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해당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 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 행위

2.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

3. 제1항제4호의 행위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대규모내부거래등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제2항제1호에 따른 해당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 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 행위는 제외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한 권리의 행사 또는 의무의 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부수적인 거래로서 **새로운 거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행위**

2. 거래당사자가 **거래금액, 거래단가, 이자율 등 거래조건을 결정할 수 없는 행위**

2. 문제점

□ 상장사 주가 변동에 따른 예외 적용 원천 배제는 불합리

○ 공익법인이 취득 또는 처분하여 이미 공시했던 상장사의 주가가 20%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주요 내용의 변경'에 해당

- 따라서 기존에 공시했던 처분/취득 주식의 가격이 변동된 경우, 이사회에서 이를 재차 의결하고 그 내용을 공시*해야 함

* 제8조(주요내용의 변경) ①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등은 이미 공시한 사항 중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의 이사회 의결로 거래가 취소되는 경우 그 상대방이 거래가 취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공시하면 별도의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요내용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거래목적 또는 거래대상의 변경.

2. 거래상대방의 변경. 다만, 상호변경, 영업양수도·합병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거래상대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대상에서 제외한다.

3. 거래금액 및 조건의 변경. 다만, 거래금액·거래단가·약정이자율 등이 당초에 의결·공시한 것보다 20%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를 거래금액 및 조건의 변경으로 본다.

4. 기타 계약기간 변경 등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래내용의 변경.

○ 상장사 주가 변동*은 '거래당사자가 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행위'에 해당하여 대규모 내부거래로 보지 않을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법인에 대하여 예외** 적용을 원천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

*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처분하거나, 상장회사의 주식을 특정인에게 블록딜 하는 형태가 아닌 장중에서 매도하는 경우는 그 누구라도 해당 주식에 대한 미래의 시가를 예측할 수 없음. 장중 시가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고, 매도자 및 매수자 모두 거래 상대방이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임.

** 제4조(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사항)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대규모내부거래등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제2항제1호에 따른 해당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 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 행위는 제외한다.

2. 거래당사자가 거래금액, 거래단가, 이자율 등 거래조건을 결정할 수 없는 행위

□ 주가 변동에 따른 의결 및 공시의무 재발생, 업무부담 증가

- 국내 주식시장(코스피코스닥)의 경우 가격 변동 범위가 +30% ~ -30%로 매우 넓어, 하루에도 20% 이상의 변동 발생 가능
- 공익법인의 이사는 사회 봉사 차원에서 선의를 가지고 무보수로 보직에 임하는데, 잦은 이사회 소집으로 선임에 어려움을 겪음
- 공익법인의 실무자는 이사회 소집(사전 일정 논의, 고지 등), 의결 및 공시 업무를 수시로 해야 해 업무상 부담 가중
 - 특히 공익법인의 경우, 타 주무부처*에서 대면 이사회 개최를 권장하고 있어 비용 및 인력 효율화를 위한 비대면 개최 불가능

*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지방자치단체 등

□ 타 공시로 충분히 대체 가능

- 상장회사와 그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주요주주 모두 한국거래소 및 금융감독원에 지분 변동 현황을 기존 공시*로 제출

- * ①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금융감독원)
- ② 임원·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금융감독원)
- ③ 사업보고서 / 분기보고서 / 반기보고서 (금융감독원)
- ④ 최대주주등 소유주식 변동신고서 (한국거래소)

- 공익법인이 상장 계열사의 주식을 취득/처분하는 내용은 수시/정기적으로 이해관계자에게 일자별 주식수, 단가, 처분방법* 모두 공개

* 공익법인이 취득/처분에 관련한 이사회 결의 후 취득/처분 주식수가 변동되지 않는다면 기존 결의한 내용의 실행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취득/처분 내역은 언제든지 모든 사람이 자본시장법에 의거한 상장사 공시로 확인할 수 있음

3. 제안 사항

□ (1안) 제6항 단서 삭제하여 공익법인에 대한 예외 적용 인정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4조(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사항)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대규모내부거래등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제2항제1호에 따른 해당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 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 행위는 제외한다. < 삭제 >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한 권리의 행사 또는 의무의 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부수적인 거래로서 새로운 거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행위
2. 거래당사자가 거래금액, 거래단가, 이자율 등 거래조건을 결정할 수 없는 행위

□ (2안) 제6항 제2호에 '주가 변동'에 대한 단서 신설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4조(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사항)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대규모내부거래등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제2항제1호에 따른 해당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 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 행위는 제외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한 권리의 행사 또는 의무의 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부수적인 거래로서 새로운 거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행위
2. 거래당사자가 거래금액, 거래단가, 이자율 등 거래조건을 결정할 수 없는 행위. 제4조제6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상장 계열회사 주식을 불특정다수에게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결정 이후의 거래금액, 거래단가 등 주가 변동의 경우는 포함한다.

1. 현황

□ 신규 계열편입된 회사의 경우, ‘계열편입일이 포함된 기간의 거래내역 전체’를 계열회사와의 거래로 기재함

- 2021년 5월 배포된 매뉴얼에서 신규 계열편입/제외 회사와의 거래 기준 변경

[매뉴얼 내용]

신규 계열 편입된 회사의 경우 계열편입일이 포함된 기간의 거래내역 전체를 ‘계열회사와의 거래’에 기재

- 계열편입된 회사의 거래상대방인 기존 소속회사는 계열편입된 회사와의 거래내역을 ‘계열회사와의 거래’에 기재
- 계열제외된 회사의 거래상대방인 소속회사는 계열제외된 회사의 계열 제외일 포함 기간의 거래내역을 ‘계열회사와의 거래’에 기재

2. 문제점

□ 실제 내부거래보다 과도하게 집계되는 오류 발생

- 현재 매뉴얼에 따르면 거래상대방인 회사가 계열편입 전(또는 계열편입 후)라도 공시작성 대상 기간의 모든 거래를 내부거래로 보고 기재

* [예시] 2023.12.01. 계열편입 된 A회사와 상품용역 거래를 한 B계열사

현행 기준으로는 현황공시 상품용역에 A회사가 계열편입 전인 2023.01.01.부터 2023.12.31.까지의 거래(10억)를 내부거래로 간주하여 공시해야 함. 실제 A회사와의 계열편입일부터 2023.12.31.까지의 거래는 1억에 불과하고 감사보고서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도 1억임에도 불구하고 공시 상으로는 내부거래가 10배가 되는 것처럼 보임.

- 거래상대방이 기업집단의 계열편입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전혀 무관한 시점까지도 모두 거래를 하게 되면 이해관계자에게 내부거래가 실제보다 많은 것으로 인지될 수 있고 감사보고서와도 상이함

3. 제안 사항

- 계열 편입/제외 회사와의 거래 기간 산정 기준을 ‘계열편입일 및 계열제외일’ 기준으로 변경 필요
 - 실질과 상이한 기준과 정보로 기업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중시키는 불합리한 기준이므로 개선 요청

V [기업집단현황] 공시 관련 일정 합리화

1. 현황

- 공시 관련 일정이 매년 지연
 - 연공시 양식 및 업무매뉴얼 개정, 설명회 일정이 매우 촉박함
 -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공시 등록 지연에 대하여 과태료 등 제재 조치 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음

[참고] 2023년 연공시 양식 및 업무매뉴얼 개정 관련 일정

- 2023.03.29. 공시양식 변경관련 의견 수렴 시작(양식 개정(안) 공유)
- 2023.05.03. 공시 업무매뉴얼 배포
- 2023.05.10.~11. 공정위 공시 설명회 진행
- 2023.05.15. 공시양식 DART 편집기 반영
- 2023.05.24. DART 편집기 상품용역거래 현황 양식 변경
- 2023.05.31. 기업집단현황공시 입력 마감

2. 문제점

- 매뉴얼이 늦게 배포되며, 일방적 양식 변경으로 혼란 가중
 - 매년 공시매뉴얼을 연공시 시점인 5월에 배포. 공시양식의 변경은 더욱 늦게 반영되는데 2023년의 경우 변경 공시양식이 5월 12일에야 다트편집기 반영
 - 2023. 5. 24. 사전설명 없이 양식을 바꾸어 3천개사가 넘는 소속회사가 다시 공시를 작성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
 - 기업 담당자가 충분히 공시 양식과 기준을 인지하고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면 공시 오류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결국 공시정보이용자에게도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문제 발생

- 공시설명회를 기업집단 지정 후 진행하여, 매뉴얼 숙지 어려움
 - 매년 연공시 설명회를 보통 5월 10일 전후로 진행하는데, 이 시점에 진행하면 소속회사에서 매뉴얼 숙지가 어려움
 - 공시점검과에서는 연공시 설명회 일정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확인 후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데, 기업집단의 지정은 매년 3월, 1차 지정자료 제출 시점에 유추 가능함

3. 제안 사항

- 매년 4월 초, 공시양식 확정 및 공시매뉴얼 배포 요청
 - 실무자들의 업무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고, 공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 확보 필요

- 매년 3월, 1차 지정자료 제출 후 예상 지정 대상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4월 중순 설명회 개최 요청